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자구 변경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그 자본금 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 요건 변경, 타 사업자와 달리 총 자본금 1억원 미만으로 유치사업 등록을 한 종합여행업 등록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제4조 제3항, 부칙 2조)
- 나. “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 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 라. 유치기관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 및 휴·폐업 시 신고하는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5조, 별지 제6호의2서식, 제7호의2서식 신설)
- 마. “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 (안 제13조)
- 바. 개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가 포함되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안 제14조)
- 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보고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보고주기를 분기별→1년으로 변경하여 간소화 (안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하고, “0원”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서류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명단 및 자격증 사본”을 “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

로, “유치업자 등록증”을 “유치사업자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환자”를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로,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및 변경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서류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재발급 해주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5항”을 “법 제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의 자격증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신청서)”를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치기관”을 “유치의료기관”으로 하며, 제2호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의료광고의 지역 및 특정 진료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지역은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수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등 의료자원, 국내 관광객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전·사후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의 서식으로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생년월일”을 “,성별 및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그”를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2호의 서식으로 전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서 보고받은 전년도 사전·사후관리 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전·사후관리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사전·사후관리 현황과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첨부서류	1. 신고 시 가.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다.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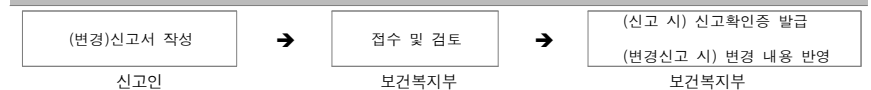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란의 "의료기관 종류"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3. 진출내용란의 "진출형태"에는 단독투자, 합작·합자투자, 인수합병, 사용권 계약(라이선싱), 가맹(프랜차이즈), 컨설팅 계약, 위탁경영, 일괄수주, 그 밖의 진출형태로 구분하여 적으시고, 복수의 진출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진출 형태를 모두 적습니다.
4. 진출내용란의 "국가 명칭" 및 "지역 명칭"은 영어로 적습니다.
5. 해외 연락사무소란의 "명칭" 및 "주소"는 영어로 적습니다.
6. 변경내용란의 "구분"에는 신고인, 의료기관, 진출구분, 진출내용, 해외연락사무소 중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의료기관 주소	외 국 인 환 자 유 치 진 료 과 목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전문의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명 칭	연 락 처 (휴 대 전 화)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1. 의료기관 명칭
2. 의료기관 주소
3. 대표자 성명
4. 대표자 생년월일
5. 외국인환자 유치 진료과목
6. 유효기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1. 명칭
2. 주소
3. 대표자 성명
4. 대표자 생년월일
5. 유효기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별지 제6호의2서식]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외국인 환자유치사업자	명칭 소재지	유치기관 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			
진료과목별 전문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사업자의 명칭			
사업자의 주소			
유치사업자의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가입			
자본금			
국내사무소의 설치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인 경우 가.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나.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 중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인 경우 가. 유치사업자 등록증 나. 명칭 및 주소, 유치사업자의 대표자 성명, 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 중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전문의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날인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등 록 구 분	외 국 인 환 자 의 료 기 관 []	외 국 인 환 자 유 치 사 업 자 []
신청인	명 칭	연 락 처 (휴 대 전 화)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문의 자격증(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별지 제7호의2서식]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휴업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폐업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신고서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폐업 []	폐업일(최종사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01. 대표자 사망[] 02. 고령(건강상)[] 03. 학업목적[] (※ 신청대상 번호란 []에 "√" 표시)	04. 경영상[] 05. 취업[] 06. 의료인 면허취소[] 07. 그 밖의 사유[]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1.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결의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유의사항

- 외국인환자유치기관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20년 10월 31일까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제4호의2).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 폐업처리
신고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신청서

[] 인증

[] 재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의료기관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작성 방법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인증을 1회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재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재인증에 "√"표시를 하십시오.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평가	→	인증	→	인증 통보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평가·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및 평가

보건복지부

인증

보건복지부

인증 통보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사전사후관리 사전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국내 의료인 정보			
성명		면허번호	
		진료과목 ¹⁾	
소속의료기관	(기관명)	유치기관	
	(주소/연락처)	등록번호	
☐ 국외 의료인 정보			
성명		진료과목 ¹⁾	
소속 의료기관 ²⁾	(의료기관명)		
	(국가)	지 역	
국외 의료인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o / x)			
☐ 외국인환자 정보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환자등록번호			
국가 ³⁾		지 역 ³⁾	
외국인환자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o / x)			
☐ 사전·사후 관리 내용			
진료일시	0000. 00. 00.	진료과목	
업무행위	☐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장소		시설	
주상병명			
사전·사후			
관리 신청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사항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 1) 해당 의료인의 전문의 과목(또는 주 진료과목)
- 2) 원격지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명,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
- 3)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장소가 위치한 국가 및 지역

유의사항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의료해외진출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사전·사후관리 현황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보고대상 분기			()년										
연 번	환자 성명	국 적	출생 연도	성 별	진료 과목	주상 병명 (상병 코드)	기타 상병 (상병 코드)	진료 유형 (사전/ 사후)	대상국가		국내 의료인 (성명) (신고주체)	국외 의료인 (성명)	ICT 장비
									국가명	지역			
1													
2													
3													
4													
5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 사항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작성 방법

ICT 장비의 경우 단말 서버, 정보통신망 등 세부내역(장비명) 작성

유의 사항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4 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

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하여 총 자본금 1억원 미만으

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
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
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
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3. 4. (생략)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내용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
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
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류가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삭 제>

2. _____

-- 명단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을 게시해야 한다.

1. (생략)

2.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④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단서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 유치사업자-----

----- 유치사업자 등록증

④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 유치사업자-----

-----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및 변경된 사항-----
-----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류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유치사업자-----

가. ~ 다.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증을 고쳐 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재발급 해주어야 한다.

1. (생략)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략)

<신설>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단서 신설>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① -----
----- 법 제6조제7항-----

-----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전문의 자격증이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되지 않거나 신고인이 해당 서 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2. ----- 유치사업자-----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유치사업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 · 폐업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 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사 람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의2서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 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 ----- ----- -----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 략)	2. ----- 유치사업자-----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신 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 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 청서) ----- ----- ----- -----.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별지 제8호서식	1. ----- 유치의료기관: -- -----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별지 제9호서식	2. ----- 유치사업자: ---- -----
제14조(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 료광고) <신 설>	제14조(의료광고의 지역 및 특정 진료과목) ①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지역은 최 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 수와 외 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등 의료자원, 국내 관광객에 대 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